

안전관리처

I 사업 개요

연 혁

- 2014. 11. 28 : 안전혁신단(T/F)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 2014. 12. 26 : 안전관리처 직제 승인
- 2015. 01. 01 : 안전관리처 직제 공포 시행

미션·비전

미 션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비 전

안전경영을 통한 중대사고 Ze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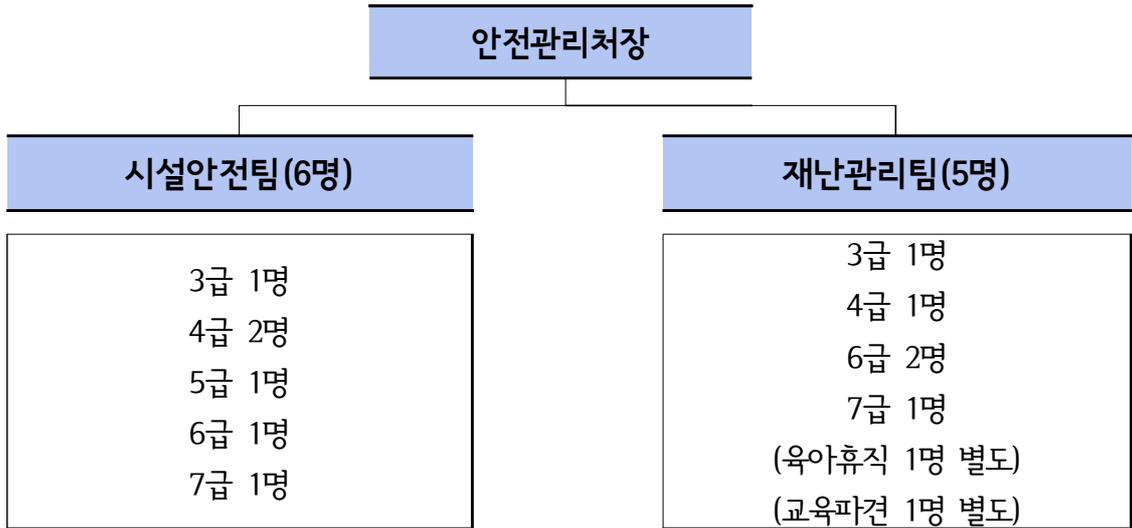
주요사업

구 분	주 요 사 업 과 제	비 고
안전경영	1. 산재예방 안전보건캠페인 전개 2. 재난훈련 체질화를 통한 대응능력 강화 3. 다중이용시설 이용시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홍보 4. BCMS 조기 정착화로 재난대응체계 확립 5. 'Live Cam'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6. 신규사업장 산재예방 점검·교육 강화 7. 안전백서 발간	핵심과제 핵심과제 일반과제 일반과제 일반과제 일반과제 일반과제
고객만족경영	8.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 도시 만들기 9. 전문가 및 시민 참여 안전경영협의회 운영	일반과제 일반과제
감성경영	10. 안전하고 편안한 근무환경 조성문화 정착	일반과제

II 일반 현황

1 조직

□ 조직도



□ 주요업무

구분	분장업무	비고
시설안전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안전·보건업무 총괄 - 산업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 산업재해예방 안전점검 및 산업재해 관한 업무 - 시설물안전관리에측시스템 관련 업무 	
재난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안전관리업무 총괄 -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업무 - 시트법(FMS) 및 재난관리대상(NDMS)시설 관련 업무 	

2 인원

구분	계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일반	사무	기술			사무	기술	사무	기술	사무	기술	사무	기술		
정원	12	1	1	10	-	1	-	2	-	5	1	3	-	-	-	-
현원	14	2	1	11	1	1	-	2	-	3	-	1	-	3	1	2
증감	2	1	-	1	1	-	-	-	-	Δ2	Δ1	Δ2	-	3	1	2

※ 육아휴직자 1명, 교육파견자 1명 포함

III 주요(시설) 운영 · 관리현황

1 재난관리 업무

《 시 행 근 거 》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시·군·구의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동법 시행령 제29조(시·도 안전관리계획)
- ◆ 이사장 방침 제7호(2017년도 재난안전관리계획)(2017.1.23)

주요업무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공단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25조)
 - 재난관리대책 수립 : 자연 재난, 사회 재난
 - 안전관리대책 수립 : 해빙기, 수방, 제설, 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공단 주요 시설물 현황

부서 개소	누계	서울 월드 컵경 기장 운영 처	서 울 야 인 이 대 공 원	청 계 천 관 리 처	동 경 기 장 운 영 처	상 가 운 영 처	추모시설운영처		장애인 콜택시 운영처	도 로 사 설 처	도 로 관 리 처	교 통 정 보 처	도 로 환 영 처	주 사 설 운 영 처	교 통 사 설 운 영 처	공 동 구 관 리 처	총 무 처
							서울시 립 승 화 원	서울추 모 공 원									
합 계	396	3	67	3	1	26	5	2	1	177	26	1	1	74	1	7	1
법 적 관 리 사 설	시특법 시설물	140	2	1		1	12	1		102	6			6	1	7	1
	재난 관리 시설	90	1	7			13	1	1	60				7			
	잘개	30								10	20						
일반시설물	136		59	3		1	4		1	5		1	1	61			

□ 공단 법정관리 시설물 현황 : 260개소

구 분	합계	법적관리 대상시설물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대상 시설물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개 소	260개소	(140개소) ◦ 청사(1개소) ◦ 월드컵주경기장(1개소), 장충체육관(1개소) ◦ 고척스카이돔(1개소) ◦ 서울어린이대공원(1개소) ◦ 도시고속도로 옹벽(16개소) ◦ 절개지(6개소) ◦ 지하도상가(12개소) ◦ 공영주차장(6개소) ◦ 동대문지하주차장(1개소) ◦ 공동구(7개소) ◦ 현화터널(1개소) ◦ 고가(17개소), 복개구조(1개소) ◦ 교량(38개소), 한강교량(1개소) ◦ 입체교차(15개소), 지하차도(10개소) ◦ 터널(4개소)	(90개소) ◦ 상가(13개소), 대공원(7개소) ◦ 월드컵(1개소), 승화원(1개소) ◦ 추모공원(1개소) ◦ 환승센터(5개소) ◦ 용산 주차빌딩(1개소) ◦ 영남공영 주차장(1개소) ◦ 교량(43개소) ◦ 지하차도(17개소)	(30개소) ◦ 절개지 (20개소) ◦ 옹벽 (10개소)																		
법 적 점검기준		◦ 정밀안전진단 (등급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A</td> <td>B,C</td> <td>D,E</td> </tr> <tr> <td>6년에 1회이상</td> <td>5년에 1회이상</td> <td>4년에 1회이상</td> </tr> </table> ◦ 정밀점검 (등급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 분</td> <td>A</td> <td>B,C</td> <td>D,E</td> </tr> <tr> <td>건축물</td> <td>4년에 1회이상</td> <td>3년에 1회이상</td> <td>2년에 1회이상</td> </tr> <tr> <td>그 외 시설물</td> <td>3년에 1회이상</td> <td>2년에 1회이상</td> <td>1년에 1회이상</td> </tr> </table> ◦ 정기점검 : 1회 이상 / 반기별	A	B,C	D,E	6년에 1회이상	5년에 1회이상	4년에 1회이상	구 분	A	B,C	D,E	건축물	4년에 1회이상	3년에 1회이상	2년에 1회이상	그 외 시설물	3년에 1회이상	2년에 1회이상	1년에 1회이상	◦ 정기점검 : 1회 이상/반기별 ◦ 안전점검(알체조사) : 년 1회 이상	◦ 안전점검 - 년 1회 이상
A	B,C	D,E																				
6년에 1회이상	5년에 1회이상	4년에 1회이상																				
구 분	A	B,C	D,E																			
건축물	4년에 1회이상	3년에 1회이상	2년에 1회이상																			
그 외 시설물	3년에 1회이상	2년에 1회이상	1년에 1회이상																			
시 설 물 적용 기준		◦ 건축물 연면적 3만㎡ 또는 16층 이상 ◦ 지하도상가 연면적 5천㎡이상 (1종 1만㎡이상) ◦ 옹벽 높이 5m, 높이100m이상	◦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관리지침 또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를 요하는 시설물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 경사도가 34도이상, 길이가 20m 이상인 인공비탈면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m 이상, 경사도가 34도 이상인 자연비탈면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																		
감독기관		국가관리(정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장																		

○ 부서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 : 140개소

구분	계	도로시설 처	도로관리 처	상가운영 처	주차시설 운영처	교통시설 운영처	서울월드컵 경기장운영 처	돔경기장 운영처	서울 어린이대공 원	추모시설 운영처	총무처	공동구 관리처
시설물수	140 개소	102	6	12	6	1	2	1	1	1	1	7

※ 대상 시설물 현황 (시특법 대상 시설 지정 기준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조)

구분	계	1 종	2 종	비고
계	140	43개소	97개소	건축물상태
A등급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시설 11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옹벽(9) - 지하차도(1) - 교량(1) ◦ 공동구 1개소 	우수
B등급	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척스카이돔 돔구장 1개소 ◦ 월드컵경기장 1개소 ◦ 지하도상가 4개소 ◦ 종묘주차장 1개소 ◦ 동대문지하주차장 1개소 ◦ 도로시설 33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11) - 교량(9) - 입체교차(7) - 지하차도(1) - 터널(4) - 한강교량(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상상나라 1개소 ◦ 공단청사 1개소 ◦ 현화터널 1개소 ◦ 장충체육관 1개소 ◦ 지하도상가 8개소 ◦ 주차장 5개소 (영등포구청역, 세종로, 천호, 학여울,잠실) ◦ 도로시설 5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옹벽(7) - 고가(3) - 복개구조(1) - 교량(24) - 입체교차(11) - 지하차도(8) ◦ 공동구 6개소 ◦ 도로관리 절개지 5개소 	양호
C등급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시설 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가(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관리 절개지 1개소 ◦ 도로시설 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체교차(2) 	보통
D등급	-			불량

※ 장충체육관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상태등급 조정 완료(2015. 6. 23 부)

○ 부서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 대상 시설물 : 90개소

구 분	계	도로 시설처	상가 운영처	어린이 대공원	주차시설 운영처	월드컵 경기장 운영처	시립 승화원	추모 공원
시설물수	90개소	60	13	7	7	1	1	1

※ 대상 시설물 현황 (특정관리대상 시설 지정 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32조)

구 분	계	A등급(안전)	B등급(양호)	C등급(보통)	D등급(불량)
계	90	10개소	74개소	6개소	
도로시설처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 39개소 ◦ 지하차도 17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량4개소 - 양화대교 복단램프 F-1 - 양화대교 복단램프 F-2 - 성산대교 복단램프 C-1 - 성산대교 복단램프 C-2 	
상가운영처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도상가 13개소 		
어린이대공원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동숲속의 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공연장, 대동물관 ◦ 꿈마루, 돔아트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각정 ◦ 식물원 	
주차시설운영처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건축물) 7개소 			
월드컵경기장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경기장 			
시립승화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승화원(건축물) 		
추모공원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모공원(화장장) 			

※ 어린이대공원 식물원 시설물상태등급 조정 완료(2017. 8. 25 부)

○ 부서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대상 절개지: 30개소

구 분	계	도로시설처	도로관리처
시설물수	30개소	10	20

※ 대상 시설물 현황 (급경사지 대상 지정 기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구 분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계	30	-	30	-	-
도로시설처	10		◦ 옹벽(10개소)		
도로관리처	20		◦ 절개지(20개소)		

○ 기타 시설물 (자체관리 대상 시설물) : 136개소

구 분	합계	서울어린이대공원	주차시설운영처	도로시설처	추모시설운영처
세부 시설명	136	59	61	5	4
	◦군자정의 58개 시설물		◦ 공영주차장(31) - 수서역외 30개소 ◦ 공영차고지(11) - 은평외 10개소 ◦ 매입차고지(17) - 문래 외 16개소 ◦ 혼잡통행료관리소(2) - 남산1,3호터널 요금소	◦ 교량(4) - 상행4교 - 하행2교 - 여의하류3교 - 여의상류C샛강교 ◦ 지하차도(1) - 망월초록길	◦ 벽제리 추모의집 - 벽제 봉안당 ◦ 왕릉식 추모의집 ◦ 건물식 추모의집 ◦ 망우리 추모공원
	교통정보처	청계천관리처	도로환경처	장애인콜택시	상가운영처
	1	3	1	1	1
	◦ 교통정보시스템(1) - 1,526개소	◦ 청계천 하천시설 - 연장 8.12km ◦ 유지용수관리소 - 면적 9,217㎡ ◦ 판자집 테마촌	◦ 사무실 건물(목동)	◦ 창동차고지	◦ 글로벌센터

□ 주요 시설물 세부 현황

○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1) - 140개소

연번	관리주체	계	시설물명	형식	주소	종별	등급	준공일
1	상하수영처	12	강남역(남측)지하도상가	지하도상가	강남구 역삼동821-1	2종	B	1982-12-20
2			강남역(북측)지하도상가	지하도상가	강남구 역삼동821-1	2종	B	1982-12-20
3			강남역기차지하도상가	지하도상가	서초구 반포동	1종	B	1979-04-30
4			소공1,2,3차, 명동지하도상가	지하도상가	중구 남대문로가소공동	1종	B	1978-12-16
5			신강지하도상가	지하도상가	중구 행락동	2종	B	1971-09-29
6			영등포역, 영등포로타지하도상가	지하도상가	영등포구 2가3가	1종	B	1983-04-30
7			을지로2구역(을지로입구포함)지하도상가	지하도상가	중구 을지로 2가	2종	B	1983-09-21
8			을지로3구역지하도상가	지하도상가	중구 을지로3가	2종	B	1983-09-30
9			을지로4구역지하도상가	지하도상가	중구 을지로4가	2종	B	1983-09-30
10			잠실역지하도상가	지하도상가	송파구 잠실동	2종	B	1981-02-28
11			잠실지하광장 지하도상가	지하도상가	송파구 잠실동	1종	B	2014-08-19
12			회현지하도상가	지하도상가	중구 충무로 1가	2종	B	1978-07-24
13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2	서울월드컵경기장	관람시설	마포구 성산동 518	1종	B	2001-12-27
14			장충체육관	관람시설	중구 동호로 241	2종	B	2015-1-31
15	뚝섬자연영처	1	고척스카이드	관람시설	구로구 경일로 430	1종	B	2015-9-15
16	서울야생야공원	1	서울상생나라	관람, 전시시설 노유자시설	광진구 능동로 216	2종	B	2012-10-26
17	서울추모공원	1	한화터널	터널	서초구 양재동 산78-9	2종	B	2011-12-23
18	주차시설운영처	6	세종로 공영주차장	주차장	종로구 세종로 80-1	2종	B	1992-08-31
19			영등포구청역 지하주차장	주차장	영등포구 당산동3가 370	2종	B	1996-09-13
20			잠실역 지하주차장	주차장	송파구 잠실동 29	2종	B	1997-05-29
21			종묘자하주차장	주차장	종로구 훈정동 5번지	1종	B	1991-12-10
22			천호역지하주차장	주차장	강동구 천호동 480-38	2종	B	1998-04-13
23			학여울역 지하주차장	주차장	강남구 대치동 512	2종	B	1993-12-31
24	교통시설운영처	1	동대문지하주차장	대형건축물	중구 산성동 251-7	1종	B	1993-07-09
25	총무처	1	시설관리공단청사	대형건축물	성동구 마장동 1527-6	2종	B	1994-08-27
26	도로시설처	102	올림픽대로 광명방향 상수교 남단 본선 좌측 양벽	양벽	강남구 압구정동	2종	A	1986-07-12
27			올림픽대로 광명방향 반포구공파트 앞 우측	양벽	서초구 반포동	2종	A	1986-07-12
28			올림픽대로 광명방향 가평동 동안파트 앞 우측 양벽	양벽	강서구 가평2동	2종	A	1986-07-12
29			올림픽대로 하일방향 가양구공파트 건너 앞 우측 양벽	양벽	강서구 가양3동	2종	A	1986-07-12
30			언주로 내곡방향 구룡철 입구 우측 양벽	양벽	강남구 개포4동	2종	B	1997-05-10
31			언주로 내곡방향 구룡철 출구 우측 양벽	양벽	서초구 내곡동	2종	B	1997-05-10
32			언주로 포이방향 구룡철 입구 우측 양벽	양벽	서초구 내곡동	2종	A	1997-05-10
33			강변북로 난지방향 한강대교-한강철교 우측 양벽	양벽	용산구 이촌2동	2종	A	1997-05-10
34			강변북로 난지방향 용강이파트-서강대교 좌측 양벽	양벽	마포구 용강동	2종	B	1997-05-10
35			강변북로 천현방향 상인대교 전 우측 양벽	양벽	마포구 망원동	2종	A	1997-05-10
36			동부간선도로 상계방향 근자교 전 우측 양벽	양벽	광진구 근자동	2종	B	1994-04-30
37			내부순환로 성당방향 홍지문-정릉터널사이 우측 양벽	양벽	종로구 평창동	2종	B	1998-12-15
38			내부순환로 상계방향 홍지문-정릉터널사이 우측 양벽	양벽	종로구 평창동	2종	B	1998-12-15
39			(구리방향) 영동대교 북단램프 하부우측 (한강측)	양벽	광진구 강변북로	2종	A	2007-06-01
40			서부간선도로 노들길 접속부 한솔이파트 주변 양벽	양벽	영등포구 양평동6가	2종	A	1989-02-13
41			두모교 양벽	양벽	용산구 동빙고동	2종	B	1995-07-30

○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2)

연번	관리주체	계	구간	형식	시설물명	주소	종별	등급	준공일
42	도시시설처	102	언주로	터널	구룡터널	강남구 개포동	1종	B	1998-04-30
43			내부순환	터널	정릉터널	종로구평창동~성북구정릉동	1종	B	1999-01-31
44			내부순환	터널	홍지문터널	서대문구홍은동~종로구평창동	1종	B	1999-06-30
45			올림픽대로	터널	방화터널	강서구 금남화로24	1종	B	2016-01-31
46			언주로	지하차도	개포지하차도	개포우성A6차얹	2종	B	1988-06-30
47			양재대로	지하차도	일원지하차도	일원동공무원아파트얹	2종	B	1993-12-31
48			강변북로	지하차도	한강대교동측	이촌동 302	2종	B	1988-10-10
49			강변북로	지하차도	잠두봉지하차도	합정동성지얹	2종	B	2002-11-15
50			강변북로	지하차도	성수대교복단	성수1가692~성수1가506-2	2종	B	1994-03-28
51			강변북로	지하차도	광나루지하차도	광장동218-17광장동212-1	2종	A	2003-12-30
52			국회대로	지하차도	경인1지하차도	영천구목동510~영천구산정동893-1	1종	B	1989-05-30
53			올림픽대로	지하차도	염창지하차도	염창동 104	2종	B	1986-08-01
54			국회대로	지하차도	경인2지하차도	신정동872-1~신월동453-3	2종	B	1993-07-31
55			올림픽대로	지하차도	가양지하차도	가양동 1	2종	B	1993-06-30
56			올림픽대로	복개구조	올림픽대로복개구조	영등포정수 사업소얹	2종	B	1993-10-01
57			언주로	입체교차	내곡IC	서초구 내곡동	2종	B	1996-09-30
58			올림픽대로	입체교차	여의상류IC	노량진동19~16	2종	B	1977-12-31
59			올림픽대로	입체교차	방화대교 남단 램프교	강서구 양천로27길 279-23	1종	B	2016-01-31
60			동부간선A	입체교차	월릉하단IC	석관동375~목동371-5	2종	B	1991-02-28
61			동부간선A	입체교차	월릉상단IC	공릉동704-7~공릉동331	2종	B	1992-12-31
62			동부간선A	입체교차	월릉IC화랑로접속램프	중랑구 목동	2종	B	2002-11-30
63			동부간선A	입체교차	중랑상단IC	중화동453~이문동91-2	2종	C	1991-02-28
64			동부간선A	입체교차	중랑하단IC	휘경2동56~면목동190	2종	C	1991-02-28
65			동부간선A	입체교차	군자상단IC	중곡동263-1~장안동204-3	2종	B	1994-02-26
66			동부간선A	입체교차	군자하단IC	송정동29~용답동205	2종	B	1994-02-26
67			올림픽대로	입체교차	염창C	강서구 염창동	1종	B	1988-12-27
68			서부간선	입체교차	목동교동측IC	양평동72-3	2종	B	1987-12-30
69			올림픽대로	입체교차	행주3교	강서구 개화동 135-2	1종	B	2013-12-10
70			올림픽대로	입체교차	개화 RAMP-A교	강서구 개화동 251-8	2종	B	2013-12-10
71			올림픽대로	입체교차	개화 RAMP-D교	강서구 개화동 101-16	1종	B	2013-12-10
72			동부간선B	한강교량	청담대교	광진구자양동~강남구청담동	1종	B	2001-02-27
73			올림픽대로	일반교량	청담2교	강남구삼성동~잠실동	1종	B	1988-04-08
74			올림픽대로	일반교량	청담1교	삼성동109	2종	B	1975-09-30
75			올림픽대로	일반교량	신천1교	풍납동~잠실동	2종	B	1980-12-31
76			올림픽대로	일반교량	신천2교	잠실동~풍납동	2종	B	1985-11-27
77			올림픽대로	일반교량	한남대교남단2교	신사동	2종	B	1999-08-18
78			강변북로	일반교량	서호교	당산철교복단~한강철교복단	1종	B	1997-12-18
79			강변북로	일반교량	망월5교	망월동453~463	1종	B	1997-12-31
80			강변북로	일반교량	당인교	마포구당인동~마포구상수동	1종	B	1999-12-24
81			강변북로	일반교량	망월1교	망월동 453-463	2종	B	1977-06-30
82			강변북로	일반교량	망월2교	망월동 453-463	2종	B	1977-06-30
83			강변북로	일반교량	반포대교복단교	반포대교복단	2종	B	1982-06-25
84			강변북로	일반교량	동빙고다리	반포대교복단강변북로	2종	B	1995-07-30

○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3)

연번	관내주체	계	구간	형식	시설물명	주소	종별	등급	준공일
85	도로시설체	102	강변북로	일반교량	망원3교	망원동 453-463	2종	B	1997-12-31
86			강변북로	일반교량	망원4교	망원동 453-463	2종	B	1997-12-31
87			강변북로	일반교량	원효로접속교	용산구 청암동 169	2종	B	2006-12-29
88			강변북로	일반교량	청암교	용산구 청암동 169	2종	B	2006-12-29
89			올림픽대로	일반교량	노랑대교	노랑진 본동 258~흑산동(현HAPI)	1종	B	1987-12-01
90			서부간선	일반교량	안양천교	독산동719 ~ 762	2종	B	1987-12-01
91			서부간선	일반교량	독산2교	독산동719 ~ 762	2종	B	1998-01-01
92			올림픽대로	일반교량	동작2교	반포동~동작동316-1	2종	B	1985-12-30
93			올림픽대로	일반교량	신동작2교	반포동 316-3	2종	B	1993-06-30
94			올림픽대로	일반교량	한남대교남단1교	잠원동 49-6(H형)	2종	B	1999-08-18
95			강변북로	일반교량	두모교	용산구 동빙고동 ~ 성동구 성수동	1종	B	1995-07-30
96			동부간선A	일반교량	돌곶이교	석관동375-2~375-3	2종	B	1991-02-28
97			동부간선A	일반교량	하계교	하계동311-5~월계동235-1	2종	B	1991-12-01
98			강변북로	일반교량	아차산대교(상행)	천호대교북단~광장동사거리	1종	B	2003-12-23
99			강변북로	일반교량	아차산대교(하행)	천호대교북단~광장동사거리	1종	B	2003-12-23
100			강변북로	일반교량	영동북단램프E교	성동구 성수동	1종	B	2007-05-31
101			동부간선A	일반교량	목동천교	목동335-1 ~ 목동330-2	2종	B	1991-12-31
102			동부간선A	일반교량	뚝도1교	성수동685-39~성수동674-4	2종	B	1992-11-30
103			동부간선A	일반교량	뚝도2교	성수동685-39~성수동674-4	2종	B	1992-11-30
104			동부간선A	일반교량	송정교	용답동205~송정동73-12	2종	B	1992-11-30
105			올림픽대로	일반교량	염창교	염창동110~양화동163	2종	B	1985-12-31
106			동부간선B	고가	탄천1고가	송파구장지동~강남구수서동	1종	B	1997-12-31
107			동부간선B	고가	탄천2고가	올림픽대로~수서.C	1종	B	1999-07-11
108			내부순환	고가	홍제천고가(북부2공구)	성산대교북단~서대문구홍은동	1종	B	1999-04-30
109			내부순환	고가	홍제천고가(북부1공구)	성산대교북단~서대문구홍은동	1종	B	1995-11-30
110			내부순환	고가	홍제천고가(강변3공구)	성산대교북단~서대문구홍은동	1종	B	1997-12-31
111			경부고속	고가	잠원고가	서초구 잠원동	1종	B	2000-06-23
112	경부고속	고가	서초고가	서초구 서초동	2종	B	1995-09-07		
113	북부간선	고가	북부간선고가	성북구 월곡동 ~ 중랑구 신내동	1종	B	2002-08-31		
114	내부순환	고가	북부고가	성북구 정릉동 하월곡동	1종	B	1999-01-31		
115	내부순환	고가	국민대진출램프	정릉동 국민대앞	2종	A	2007-11-30		
116	동부간선A	고가	수락고가차도	상계동 1118	2종	B	1994-07-30		
117	강변북로	고가	자양고가	광진구 자양동	1종	B	2003-12-30		
118	강변북로	고가	서빙고고가차도(구)	용산구 서빙고동 186	1종	B	1970-12-01		
119	강변북로	고가	서빙고고가차도(신)	용산구 장문로49-길 32	1종	B	2016-04-30		
120	내부순환	고가	정릉천고가도로(1공구)	성수동~하월곡동	1종	C	1998-05-20		
121	내부순환	고가	정릉천고가도로(2공구)	성수동~하월곡동	1종	C	1999-03-31		
122	서부간선	고가	구일고가	구로구 구로1동 685-226	2종	B	2001-12-31		
123	강변북로	일반교량	이천C RAMP-F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1종	B	2016-12-15		
124	강변북로	일반교량	이천C RAMP-G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1종	B	2016-12-15		
125	강변북로	입체교차	이천C RAMP-K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2종	B	2016-12-15		
126	강변북로	입체교차	이천C RAMP-L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	2종	B	2016-12-15		
127	올림픽대로	일반교량	암사C RAMP-H	강동구 암사동	1종	B	2016-12-15		

○ 시특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4)

연번	관리주체	계	시 설 물 명	형식	주 소	종별	등급	준공일
128	도로관리처	6	내부순환로 성동방향 홍지문~정릉터널 사이 절개지	절토사면	종로구 평창동	2종	C	-
129			언주로(내곡방향) 구룡터널 입구 좌우측	절토사면	강남구 개포4동	2종	B	-
130			언주로(내곡방향) 내곡C 지난 우측 진입램프	절토사면	서초구 내곡동1	2종	B	-
131			언주로(포이방향) 내곡C 전 우측 진출램프	절토사면	서초구내곡동1	2종	B	-
132			언주로(포이방향) 내곡C 지난 진입램프 우측	절토사면	서초구 내곡동1	2종	B	-
133			올림픽대로(강일방향) 증미산 앞 우측	절토사면	강서구 염창동	2종	B	-
134	공동구관리처	7	여의도공동구	공동구	영등포구 여의도동	2종	B	1978-02
135			상암공동구	공동구	마포구 상암동	2종	B	2004-10
136			개포공동구	공동구	서초구 양재동, 강남구 개포동	2종	B	1987-12
137			가락공동구	공동구	송파구 가락동	2종	B	1987-12
138			목동공동구	공동구	양천구 목동	2종	B	1987-12
139			상계공동구	공동구	노원구 상계동	2종	B	1989-07
140			은평공동구	공동구	은평구 진관동	2종	A	2013-06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1) : 90개소

연번	관리주체	계	위 치	시 설 명	주 소 (구,동,번지)	시설현황 (준공년도, A, B=)	위험 등급	비 고
1	도로 시설체	60	올림픽대로	암사지하보차도	암사동신창A앞	1985-11-27, 연장 53	B	지하차도
2			올림픽대로	화곡지하차도	가양동 2-21	1990-08-10, 연장 70	B	지하차도
3			올림픽대로	구반포지하차도	반포주공아파트 73동앞	1980-01-01, 연장 50	B	지하차도
4			올림픽대로	반포지하차도	반포대교 남단	1981-12-30, 연장 80.5	B	지하차도
5			동부간선B	수서지하차도	수서동329부근	1997-12-31, 연장 90	B	지하차도
6			동부간선A	마들지하차도	상계동 767-7	1988-08-30, 연장 62	B	지하차도
7			동부간선A	노원지하차도	상계동 738	1988-08-30, 연장 62	B	지하차도
8			동부간선A	상계지하차도	상계동 855-60	1988-08-30, 연장 62	B	지하차도
9			동부간선A	수락지하차도	상계동 1169-6	1994-07-31, 연장 90	B	지하차도
10			동부간선A	중랑교서측언더패스	회경동8-1~회경동119	1993-08-01, 연장 280	B	지하차도
11			동부간선A	중랑교동측언더패스	상봉동474-26~중화동325	1993-10-01, 연장 270	B	지하차도
12			서부간선	경원철도환타지하보차도	구로구 고척동	1988-10-27, 연장 30	B	지하차도
13			서부간선	고척지하차도	구로동 635	1989-12-28, 연장 85	B	지하차도
14			서부간선	목동교동측지하차도	양평동 71-3	1987-12-30, 연장 50	B	지하차도
15			서부간선	오목교동측지하차도	양평동2가 41	1987-08-29, 연장 61	B	지하차도
16			서부간선	오금교동측지하차도	신도림동 288-11	1987-08-29, 연장 60	B	지하차도
17			서부간선	신정교동측지하차도	문래동 5가 27	1987-12-30, 연장 42	B	지하차도
18			서부간선	독산1교	금천구 독산본동	1998-01-01, 연장 93	B	일반교량
19			강변북로	테크노차도육교	구의제3동 546-4	1991-12-01, 연장 186	B	일반교량
20			강변북로	잠실대교북단램프C	광진구 자양동 673	2003-12-30, 연장 40	B	일반교량
21			강변북로	잠실대교북단램프D	광진구 자양동 691	2003-12-30, 연장 71	B	일반교량
22			강변북로	천호대교북단U턴차로교	광장동 561-2	2003-12-30, 연장 35	B	일반교량
23			강변북로	원효대교북단교	현대정비공장주변	1981-11-19, 연장 40	B	일반교량
24			강변북로	새남터다리	용산구 한강철교옆	1996-06-30, 연장 56	B	일반교량
25			강변북로	서빙고다리	용산구신동아아파트앞	1996-06-30, 연장 90	B	일반교량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2)

연번	관리주체	계	위 치	시 설 명	주 소 (구,동,번지)	시설현황 (준공연도=,B=)	위험 등급	비 고
26	도로 시설처	60	강변북로	봉원교	마포구 신정동95	1999-09-30, 연장 40	B	일반교량
27			강변북로	두모교접속교	용산구 서빙고동 170-10	2005-07-14, 연장 66	B	일반교량
28			강변북로	영동대교 북단램프D	광진구 자양동 191-1	2007-05-31, 연장 82	B	일반교량
29			강변북로	양화대교 북단램프F-1	마포구 합정동	1997-12-31, 연장 59	C	일반교량
30			강변북로	양화대교 북단램프F-2	마포구 합정동	1997-12-31, 연장 57	C	일반교량
31			강변북로	성산대교 북단램프C-1	마포구 망원동	1997-12-31, 연장 60	C	일반교량
32			강변북로	성산대교 북단램프C-2	마포구 망원동	1997-12-31, 연장 54	C	일반교량
33			올림픽대로	상행3교	풍납동4	1985-11-27, 연장 40	B	일반교량
34			올림픽대로	하행1교	천호동337	1985-11-27, 연장 40	B	일반교량
35			올림픽대로	하행3교	잠실4동 장미1차A뒤	1986-05-10, 연장 70	B	일반교량
36			올림픽대로	하행4교	잠실5동 주공A뒤	1986-05-10, 연장 20	B	일반교량
37			올림픽대로	고덕천교	강동구 하일동	1991-12-26, 연장 54	B	일반교량
38			올림픽대로	반포고가	반포본동 1 반포C	2005-10-30, 연장 50	B	일반교량
39			올림픽대로	상행1교	잠실5동 주공A뒤	1985-11-27, 연장 70	B	일반교량
40			올림픽대로	상행2교	잠실4동 장미A뒤	1985-11-27, 연장 20	B	일반교량
41			올림픽대로	동작교	반포동1328~동작동326-1	1971-03-01, 연장 90	B	일반교량
42			올림픽대로	반포대교통과교	반포동 115-5	1993-06-30, 연장 52	B	일반교량
43			올림픽대로	여의하류1.C	영등포구여의도동	2010-05-20, 연장 30	B	일반교량
44			경부고속	양재천교	서초구 양재동	1995-09-07, 연장 72	B	일반교량
45			경부고속	서초교	서초구 서초동1682	1995-09-07, 연장 21	B	일반교량
46			경부고속	서초1고가	서초구 서초동	1995-09-07, 연장 45	B	일반교량
47			경부고속	서초2고가	서초구 서초동	1995-09-07, 연장 40	B	일반교량
48			경부고속	서초3고가	서초구 서초동	1995-09-07, 연장 45	B	일반교량
49			경부고속	우면고가	서초구 우면동	1995-09-07, 연장 40	B	일반교량
50			경부고속	상촌고가	서초구 양재동	1995-09-07, 연장 67	B	일반교량
51			동부간선A	당현4교	상계동 754-12	1980-05-13, 연장 55	B	일반교량
52			동부간선A	공대천교	공릉동 406-8	1991-12-01, 연장 26	B	일반교량
53			동부간선A	면목천교	면목동727-365~면목동727-28	1991-03-31, 연장 96	B	일반교량
54			북부간선	신내1교	신내동71-15~신내동71-36	1993-06-11, 연장 30	B	일반교량
55			북부간선	두물다리	목동742-3~목동27-1	1997-07-31, 연장 58	B	일반교량
56			북부간선	봉화교	신내동720-1~신내동640	1997-07-31, 연장 85	B	일반교량
57			경부고속	신사1고가	잠원로~강남대로(하행편도)	2005-10-30, 연장 20	B	일반교량
58			경부고속	신사2고가	신사역~신동초교(양복)	2005-10-30, 연장 30	B	일반교량
59			경부고속	한남입체시설램프A	서초구 잠원동	1995-12-23, 연장 90	B	일반교량
60			양재대로	수서C	강남구 일원1동 357	1986-05-30, 연장 64	B	일반교량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3)

연번	관리주체	계	시 설 명	주 소 (구,동,번지)	시설현황 (준공연도=,B=)	지 정 년월일	위험 등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61	상가운영처	13	시청광장지하도 상가	중구 을지로1,2가	1983준공 (4,871㎡)	'84.4.01 (83.12.18)	B	-	지하도 (상 가)
62			인 현 지하도상가	중구 인현동	1970준공 (1,878㎡)	'90.1.1	B	-	"
63			청량리 지하도상가	동대문구 전농동	1974준공 (777㎡)	'98.1.1	B	-	"
64			남대문 지하도상가	중구 남대문로4가	1977준공 (3,831㎡)	'99.3.3	B	-	"
65			충 무 지하도상가	중구 남산동2가	1977준공 (2,202㎡)	'99.7.1	B	-	"
66			청계5가 지하도상가	중구 방산동	1977준공 (1,993㎡)	'01.12	B	-	"
67			마전교(한일) 지하도상가	종로구 종로5가	1977준공 (1,210㎡)	'01.12	B	1	"
68			종로4가 지하도상가	종로구 종로4가	1977준공 (2,995㎡)	'99.3.16	B	6	"
69			동대문1,2차 지하도상가	종로구 창신동	1978준공 (1,358㎡)	'99.8.1	B	1	"
70			종각쇼핑 센터	종로구 종로2가	1979준공 (4,724㎡)	'00.1.1	B	-	"
71			종로5가 지하도상가	종로구 종로5가동	1980준공 (4,165㎡)	'01.6.8	B	-	"
72			영등포시장	영등포구 영등포5가	1977준공 (3,637㎡)	'99.5.1	B	-	"
73			청계6가	중구을지로 18-11	1975/6. 7준공 (823㎡)	'04.12	B	-	"
74	서울어린이 대공원	7	동물공연장	광진구 능동216번지	'01.3.12준공 2층(지1층)(2,123㎡)	'03.2.27	B	-	공연시설
75			팔각정	"	73년 3층/1층 (2,304㎡)	-	C	-	판매시설
76			식물원	"	1972.11.2 준공 2층(지1층)(2,123㎡)	'01.12.28	C	-	"
77			능동숲속의 무대	"	2009년 준공 2층~B1(2,387㎡)	'07.11	A	-	"
78			대동물관	"	1999년 준공 지상 2층(1,115㎡)	'11	B	-	관람시설
79			꿈마루	"	1973년 준공 (4,885㎡)	'01.12.03	B	-	관람시설
80			돔아트홀	"	2003년 준공 (2,208㎡)	'07.11.01	B	-	공연시설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4)

연번	관리주체	계	시 설 명	주 소 (구,동,번지)	시설현황 (준공년도=,B=)	지 정 년월일	위험 등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81	서울월드컵 경기장운영처	1	보조경기장	마포구 난지도길 66	1,238,36㎡	2009.7	A	-	관람, 전시시설
82	서울시립 승화원	1	시립승화원 장재장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산178-1	'86.12.7 B2, 지상2(8,674㎡)	1986.12	B	-	건축물
83	서울 추모공원	1	화장장	서초구 원지동 68번지	- 건축면적 : 6,868㎡ - 연 면 적 : 17,911㎡	2010.6	A	55,053	화장시설
84	주차시설 운영처	7	구파발 환승센터	은평구 진관동 70-1	A=13,065㎡ (B2 ~ 지상 3층)	2011.	A	-	주차장
85			천왕역 환승센터	구로구 오류동 354-4	A=12,834㎡ (B2 ~ 지상 3층)	2012.3	A	-	주차장
86			개화역 환승센터	강서구 개화동 490-3	A= 16,788.05㎡ (지상 4층~B1층)	2012.5	A	26,000	주차장
87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도봉구 도봉동288-19	A= 16,597.22㎡ (지상 4층 ~ B2층)	2013.7	A	30,000	주차장
88			용산주차빌딩 공영주차장	용산구 한강로2가 12-9	A= 20,911.89㎡ (지상 6층 ~ B1층)	2013.11	A	30,000	주차장
89			영남공영 주차장	영등포구 영등포4가 123	노외 주차장 805대	2014.1	A	-	주차장
90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마곡서1로 111-12	A=7,878 (지상 3층 ~B1층)	2017.3	A	-	주차장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대상 절개지(1) : 30개소

연번	관리주체	계	시 설 명	주 소 (구,동,번지)	시설현황 (준공년도=,B=)	지 정 년월일	위험 등급	사업비 (백만원)	비 고
1	도로시설처	10	강변-난지 마포전기3구간	마포전기앞 한강측(석축)	L=45m H=5.0~7.5	'03.11.30	B	-	옹벽
2			강변-난지 당인교구간	당인교전 한강측	L=60m H=5.0~7.0	"	B	-	옹벽
3			올림-공항 암사지하차도	암사 지하차도앞	L=234m H=0.6~6.8	"	B	-	옹벽
4			올림-공항 성수대교구간	성수대교전 500m좌측	L=587m H=0.0~5.4	"	B	-	옹벽
5			올림-공항 성산지하차도	성산지하차도 지난 우측	L=130m H=1.0~9.3	"	B	-	옹벽
6			올림-공항 성산대교구간	성산대교지난 400m 우측	L=123m H=0.5~7.0	'03.11.30	B	-	옹벽
7			올림-하일 암사고개구간	암사고개 위 우측	L=390m H=1.0~7.0	'03.11.30	B	-	옹벽
8			올림-하일 고덕천교구간	고덕천교 지난우측	L=117m H=2.0~6.0	"	B	-	옹벽
9			서부-시흥 양평교구간	양평교전 우측램프	L=118m H=0.5~6.5	"	B	-	옹벽
10			서부-성산 오목교구간	오목교 지난우측	L=198m H=2.0~5.5	"	B	-	옹벽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대상 절개지(2)

연번	부 서	계	위 치	구배	연직높이(m)			연장 (m)	위험등급	비 고
					1	절토면	계			
11	도로 관리처	20	양재대로(수서방향) 삼성의료원 사거리 전 우측	1:0.7	1.2	13.8	15.0	60	B	
12			양재대로(수서방향) 삼성의료원 앞 우측	1:0.7	1.2	16.8	18.0	60	B	
13			양재대로(수서방향) 일원지하차도 지난 우측	1:0.7	1.2	26.8	28.0	210	B	
14			양재대로(수서방향) 일원지하차도 전 우측	1:0.7	1.2	16.8	18.0	60	B	
15			양재대로(수서방향) 개포3,4단지 삼거리 지난 우측	1:0.7	1.2	23.8	25.0	190	B	
16			양재대로(수서방향) 개포3,4단지 삼거리 전 우측	1:0.7	1.2	18.8	25.0	190	B	
17			양재대로(수서방향) 구룡터널 전 우측	1:1	3.5	16.5	20.0	360	B	
18			양재대로(수서방향) 능인선원 지난 우측	1:1	3.5	11.5	15.0	300	B	
19			양재대로(수서방향) 능인선원 전 우측	1:1	3.5	11.5	15.0	405	B	
20			언주로(내곡방향) 구룡터널 출구 좌우측	1:0.3	6.1	22.9	29.0	870	B	
21			언주로(내곡방향) 내곡IC 전 우측	1:0.5	4.0	11.0	15.0	180	B	
22			올림픽대로(하일방향) 공산진출램프 전 우측	1:0.5	1.5	18.5	20.0	122	B	
23			올림픽대로(하일방향) 염창IC 진출램프 우측	1:0.7	0.9	14.1	15.0	190	B	
24			올림픽대로(하일방향) 암사고개 전 우측	1:0.7	1.6	12.4	14.0	170	B	
25			올림픽대로(하일방향) 암사고개 우측	1:0.5	5.0	15.0	20.0	245	B	
26			올림픽대로(공항방향) 암사고개 우측	1:0.5	3.0	17.0	20.0	190	B	
27			내부순환도로(성동방향) 홍지문터널 입구 갭구부 사면	1:0.5	-	20.0	20.0	110	B	
28			내부순환로(성산방향) 정릉~홍지문터널 사이 우측	1:0.5	6.5	10.0	16.5	260	B	
29			내부순환로(성산방향) 정릉터널 입구 갭구부 사면 좌.우	1:0.5	1.0	15.0	16.5	320	B	
30			북부간선도로(구리방향) 구리시계전 우측	1:1	2.0	23.0	25.0	100	B	

□ 내진설계 적용여부 및 성능평가 세부현황

시설물	세부현황	개소	내진성능확보 (180개소)		내진성능 미확보 (73개소)				소요 예산 (백만원)
			내진설계 적용 (지진규모)	내진성능 평가결과 내진성능 확보	내진성능 평가결과 내진성능 미확보	내진성능 미평가	철거예정	내진 보완계획 (성능평가, 보강)	
계		253	65	115	24	48	1	-	27,676
건축물	소 계	92	22	20	1	48	1	-	1,168
	청사	1	1	-	-	-	-	-	-
	누비어린이집	1	1	-	-	-	-	-	-
	서울글로벌센터	1	1	-	-	-	-	-	-
	청계천 유지용수관리소	1	-	-	-	1	-	'17년 내진성능 평가예정	10
	지하도상가	25	-	15	-	10	-	'17년 내진성능 평가예정	36
	서울월드컵 경기장	2	1	-	-	1	-	'17년 내진성능 평가예정 (보조경기장)	6
	장충체육관	1	1	-	-	-	-	-	-
	고척스카이돔	1	1	-	-	-	-	-	-
	어린이대공원	15	2	2	1 (팔각당)	10	-	'17년 내진성능 평가예정 ※팔각당 '18년 보강 예정	202
	추모시설	5	2	1	-	2	-	'17년 내진성능 평가예정	31
	주차장	18	6	2	-	10	-	'17년 내진성능 평가예정	485
	차고지	19	5	-	-	13	1 (송파)	'17년 내진성능평가예정 ※송파차고지 철거예정	383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1	1	-	-	-	-	-	-
	공동구통합관리센터	1	-	-	-	1	-	'17년 내진성능 평가예정	15
도로 시설물	소 계	154	42	89	23	-	-	-	26,508
	교량	117	39	56	22	-	-	'17년 9개 '18년 13개 '19년 1개 내진보강공사 시행예정	'17년 3,858 '18년 5,550 '19년 16,700
	터널 (지하차도)	31	3	27	1	-	-	'19년 1개 내진보강공사 시행예정	'19년 400
	언더패스	6	-	6	-	-	-	-	-
공동구	공동구	7	1	6	-	-	-	-	

□ 점검현황

○ 시특법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구 분	점검종류 · 대상	실시시기	점검내용	실시자 자격
안 전 점 검	정기점검(1,2종)	· 1회 이상 / 6개월 (A·B·C등급의 경우) · 3회 이상 / 1년 (D·E등급의 경우)	주요부위 간단 육안검사	초급기술자 수준
	정밀점검(1,2종)	· 시설물1회이상/1~3년 · 건축물1회이상/2~4년	시설물 전체부위 면밀한 육안검사 및 간단한 기구에 의한 측정	고급기술자 수준
	긴급점검(1,2종)	· 관리주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정 밀 안 전 진 단	정밀안전진단 (1종)	· 완공후 10년경과 된 때 부터 1년 이내, 그 후 등급에 따라 4~6년에 1회 이상	정밀한 육안검사와 다양한 시험, 측정	특급기술자 수준

○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점검종류	대 상	시 기	비 고
정기안전점검	· A, B, C 등급	반기별 1회 이상	
	· D 등급	월 1회 이상	
	· E 등급	월 2회 이상	
수시안전점검	필요시 시행		

※ 특정관리대상시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

○ 급경사절개지에 대한 안전점검

구 분	대 상	시 기	비 고
안전점검	· 급경사지	년 1회 이상	

년 1회 이상 점검 후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는 안전점검 생략 가능

※ 급경사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

- 자연비탈면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0m 이상, 경사도 34도 이상

- 인공비탈면 :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 경사도 34도 이상, 길이가 20m 이상

○ 자체점검

구 분	점검시기	점 검 내 용	점 검 자
정기점검	매분기	▪ 해빙기, 풍수해, 가을철, 동절기	안전관리처
특별점검	매분기 / 필요시	▪ 시민이용시설 간부직원 교차점검 ▪ 테마(집중) 점검 - 상황별, 시기별 적정주제 선정	각부서 팀장급 이상 안전관리처
상시점검	연 중	▪ 다중이용시설물 및 공사장 중점점검 ▪ 시설물(전기,소방등)의 내외부 진단(점검,훈련) 참관 및 점검	안전관리처
긴급점검	긴급시	▪ 긴급사태(재난 등) 발생시 점검	안전관리처

점검계획 및 실적

○ 점검계획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정기	해빙기		—										
	풍수해					—							
	가을철							—					
	동절기											—	
특별	간부직원 교차점검					—						—	
	테마(집중) 점검	—											
상시	다중이용시설 및 공사장	—											
	내,외부진단 (점검,훈련)	—											

○ 2015년도 정기점검 실적 (4건)

연번	점 검 명	적출건수	조치건수	조치율
합계	4 건	440	440	100%
1	해빙기 안전점검 및 간부직원 교차점검(2.13 ~ 3.18)	117	117	100%
2	여름철 풍수해 안전점검 및 간부직원 교차점검(5.26 ~ 6.22)	111	111	100%
3	가을철 안전점검 및 간부직원 교차점검(9.1 ~ 9.22)	99	99	100%
4	겨울철 안전점검 및 간부직원 교차점검(11.16 ~ 12.8)	113	113	100%

○ 2015년도 특별점검 실적 (25건)

연번	점 검 명	적출건수	조치건수	조치율
합계	25 건	914	914	100%
1	정릉터널 관광버스 전도사고 관련 특별점검(1. 6)	1	1	100%
2	장충체육관 개장 전 특별점검(1.13 ~1.14)	95	95	100%
3	어린이 대공원 방역실태 특별점검(1.22)	1	1	100%
4	어린이 대공원 놀이시설 특별점검(1.30)	8	8	100%
5	장지동 공영차고지 차량 화재사고 현장 특별점검(2. 3)	6	6	100%
6	어린이 대공원 동물원 특별안전점검(2. 25)	30	30	100%
7	한강진 공영주차장 현장 특별점검(2.28)	3	3	100%
8	청계천 마장2교 하류 역세 화재관련 특별점검(3.17)	5	5	100%
9	신촌 현대백화점 인근 흡입준설차량 전도사고 특별점검(3.29)	3	3	100%
10	국민안전처 장관 장충체육관 현장점검 대비 사전 특별점검(4. 1)	8	8	100%
11	태양광 발전 구조물 특별 안전점검(4. 2~4. 5)	3	3	100%
12	외부경영평가 대비 사전 안전점검(4.10~4.24)	530	530	100%
13	5월 어린이날 행사대비 사전 예방점검(4.13)	15	15	100%
14	터미널 지하도상가 식당점포 화재원인 조사 특별점검(5. 8)	7	7	100%
15	풍수해 대비 이사장 현장 안전점검(5.29 / 6.12)	3	3	100%
16	강남지하도상가 화재관련 현장 특별점검(6. 9)	4	4	100%
17	상반기 찾아가는 현장 점검 서비스(6.23)	2	2	100%
18	여름철 풍수해 특별안전점검(7. 8 ~ 7.22)	60	60	100%
19	공단 승강장치 특별점검(8.12 ~ 8.21)	51	51	100%
20	동빙고가교 가로등주 전도사고관련 현장특별점검(9.22)	2	2	100%
21	고척스카이돔 현장 특별점검(10.8)	6	6	100%
22	자동차전용도로 공사현장(야간) 안전점검(10.7 ~ 16)	6	6	100%
23	고척스카이돔 개장행사 대비 특별점검(10.28)	28	28	100%
24	하반기 찾아가는 점검 서비스(12.17)	3	3	100%
25	겨울철 화재 예방 특별 안전점검(12.28 ~ '16.1.7)	34	34	100%

○ 2016년 정기점검 실적 (4건)

연번	점 검 명	적출건수	조치건수	조치율
합계	4 건	358	358	100%
1	해빙기 안전점검(3.3 ~ 3.31)	57	57	100%
2	풍수해 안전점검 및 간부직원 교차점검(5.18 ~ 6.24)	86	86	100%
3	추석명절 대비 가을철 안전점검(8.29 ~ 9.29)	90	90	100%
4	겨울철 안전점검 및 간부직원 교차점검(11.21~12.8)	125	125	100%

○ 2016년 특별점검 실적 (7건)

연번	점 검 명	적출건수	조치건수	조치율
합계	5 건	258	258	100%
1	설 연휴 대비 안전점검(1.19 ~ 1.21)	16	16	100%
2	2016년 외부 경영평가 대비 현장점검(4.25 ~ 5.13)	119	119	100%
3	시청광장 지하도상가 연기발생 관련 현장특별점검(5.20)	8	8	100%
4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현장 특별점검(6.13~6.27)	85	85	100%
5	폭염대비 어린이대공원 동물관리 실태점검(8.10)	2	2	100%
6	장안철교 작업자 추락사고 관련 공사현장 특별점검(9.6)	9	9	100%
7	야간공사현장 특별 안전점검	19	19	100%

○ 2017년 정기점검 실적 (2건)

연번	점 검 명	적출건수	조치건수	조치율
합계	1 건	191	178	93%
1	해빙기 안전점검(3.3 ~ 3.31)	79	74	93%
2	풍수해 안전점검 및 간부직원 교차점검(5.8 ~ 6.12)	112	104	92%

○ 2017년 특별점검 실적 (5건)

연번	점 검 명	적출건수	조치건수	조치율
합계	5 건	252	245	100%
1	설 연휴 대비 특별 안전점검(1.16 ~ 1.23)	26	26	100%
2	공사현장 특별 안전점검(4.24 ~ 4.27)	10	10	100%
3	2017년 외부 경영평가 대비 현장점검(5.8 ~ 5.22)	209	209	100%
4	유지용수관리소 태양광접속반 화재 관련 현장점검(8.1 ~ 8.4)	3	3	100%
5	폭염대비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8.3 ~ 8.4)	4	4	100%

□ 공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체계

《 시행 근거 》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7조(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

- 운영부서 : 안전관리처
- 기 능 :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및 신속한 재난상황 지휘
재난상황의 종합관리 등
- 운영시기 : 재난 1,2,3등급 규모의 자연, 사회 재난 발생시 또는
기타 공단사업장에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재난 발생시
- 운영판단 : 이사장
- 재난 상황전파 및 수습절차
 - 재난 상황 접수, 재난발생 목격 · 신고
 - 재난 상황 전파, 비상연락(보고)
 - 긴급구조 · 응급조치 · 요청
 - 공단재대본 상황실 설치 · 운영
 - 수습 및 복구
 -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 시행 / 상황종료
- 적용대상 재난 유형

구 분	1급 재난	2급 재난	3급 재난
재난 유형	중앙대책본부가 설치되어야 할 정도의 대형재난 또는 중앙부처 차원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재난이 공단에서 발생되거나, 재난발생예고 발령시	市 차원의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수습복구 해야하는 재난 발생시 또는 재난발생 예고 발령시	공단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사장) 이 공단지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대비수습복구 명령시 * <u>인명사고, 물적피해, 다수의 시민불편 예상시 등</u> (단순 교통사고 제외)

※ 과거사례 : 시립묘지 산사태, 대공원 놀이동산 사고, 종각지하상가 폐가스 누출, 여의도공동구 화재 발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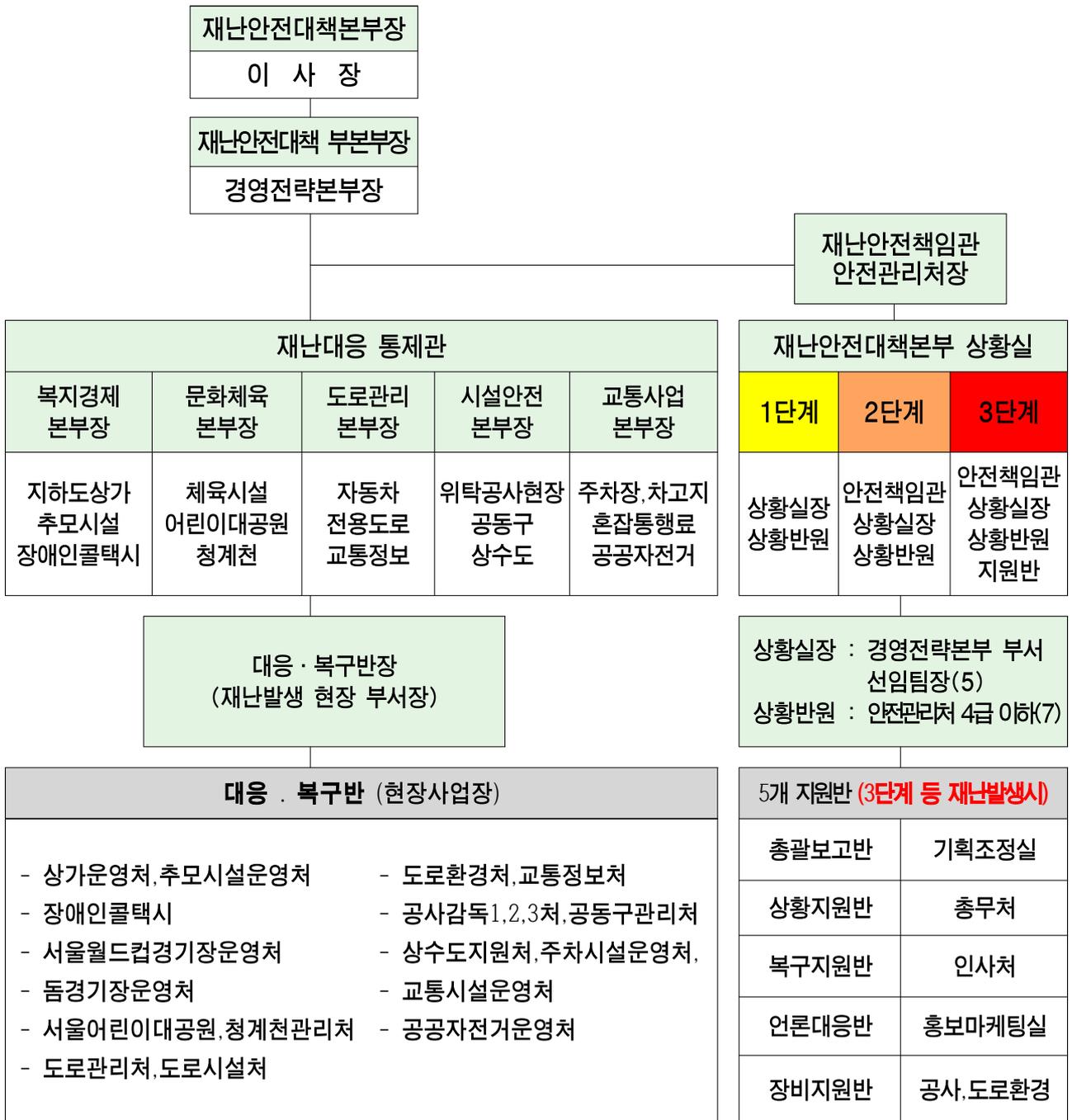
○ 공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구성 및 주요임무

공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조직구성 및 주요임무

○ 기본방향

- 총괄보고반, 상황지원반, 복구지원반, 언론대응반, 장비지원반으로 편성하여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 조직도



※ 대형 재난사고 발생시 이사장 지시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와 「현장대응반」 동시 설치운영

○ 수방,제설,지진 단계별 상황근무 기준

단계	상황기준		상 황 근 무		행 동 요 령
			상 황 본 부	복구반 (서울시 소집기준)	
보강 단계	수방	강우예보 (일강수량 30mm이상 강우 예보시)	본사 당직자 업무 대행 (야간, 공휴일) 평일주간 : 현장관리 일부부서만 근무 (안전관리처 : 문서수신, 발송등 행정처리)	부서별 기준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근무체계 가동 - 수방,제설 가용인력, 장비점검 - 살포기 장착 및 염수 주입(제설) - 제설차량 및 장비 작업대기(제설)
	제설	강설예보 (강설확률 30%이상, 기온2°C미만 예보시)			
	지진	규모 3.0~4.9 (서울·수도권 외 지역)			
1단계 (주의)	수방	호우주의보 - 6시간 70mm이상 - 12시간 110mm이상 한강대교 수위 - 4.5m 도달시 태풍주의보 - 순간풍속 20m/s	근 무 : 2명 (경영전략본부 소속 직원) ○상황실장 1 (경영전략본부 팀장) ○반원 1 (4급이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조정관(팀장) 지휘 - 기상예보접수 전파 및 보고 - 비상연락망/연동망 확인 - 현장 상황파악 유지 - 위험/취약지역 사전점검 - 제설재 상차, 작업실시(제설)
	제설	강설예보 (적설량 1~5cm 예보시)			
	지진	규모 3.0~3.9 (서울 및 수도권) 규모 5.0 이상 (서울·수도권 외 지역)			
2단계 (경계)	수방	호우경보 - 6시간 110mm이상 - 12시간 180mm이상 홍수주의보 - 한강대교 수위 8.5m 도달시 태풍경보 2급 - 순간풍속 26m/s - 총강우량 200mm이상	근 무 : 3명 (경영전략본부 소속 직원) ○재난안전책임관 1 (안전관리처장) ○상황실장 1 (경영전략본부 팀장) ○반원 1 (4급이하)	현원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조정관(처장) 지휘 - 재해대책 각 반장 현장소장 비상소집 - 기동순찰반 운영(현장사업소) - 본부단위별 수방, 제설작업 등 상황대처 실시 - 제설삽날 장착, 밀어내기 작업(제설)
	제설	대설주의보 (적설량 5cm이상 예보시)			
	지진	규모 4.0~4.9 (서울 및 수도권)			
3단계 (비상)	수방	홍수경보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시 이재민다수발생 태풍경보 1급 - 순간풍속 33m/s 이상 - 총강우량 400mm이상	근 무 : 15명 ○본부장 1 (이사장) ○부분부장 1 (경영전략본부장) ○재난대응통제관 5((복지문화도로시설교통) ○재난안전책임관 외 4(기획총무,인사,홍보) ※ 필요시 기획,총무,인사,홍보 현원의 1/2 근무 ○상황실장 1 (안전관리처 소속 팀장) ※ 장비지원반(공사,도로환경)은 현장 관리 ○반원 2 (안전관리처 소속 4급 이하)	현원 1/2 (필요시 전원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장 정위치 - 재해대책 요원 전원근무 - 본사 직원 현장지원(필요시) - 3단계 지속 시 지원반 추가(필요시) - 본부단위별 수방, 제설작업 등 상황대처 실시 - 제설삽날 밀어내기 작업 및 가용장비 총동원(제설)
	제설	대설경보 (적설량 10cm 이상 예보시)			
	지진	규모 5.0이상 (서울 및 수도권)			

《 시 행 근 거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 안전보건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보좌 및 조언지도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 산업재해 발생원인조사,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
 - 위험성평가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
 -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보건관리자 등(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주요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 보좌 및 조언지도
 -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 작업장 내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점검
 - 위험성평가
 - 산업재해 발생원인조사, 분석,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 산업안전·보건관련 선임자(법적) 현황

《 법 적 기 준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부동산 및 임대업)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전담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사업장(부동산)에는 보건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구 분	성 명	선임년월일	부 서 명	직 위	비 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지 윤	2016.01.08	공 단	이사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 (안전보건책임자 선임등)
안전관리자	임 영 성	2009.06.15	안전관리처	차장	건설안전기사
	박 훈	2016.08.16	안전관리처	대리	산업안전기사
보건관리자	남 현 수	2013.07.17	안전관리처	차장	대기환경산업기사

※ 명예산업안전감독관(김학원:노동조합 산업안전국장) : 고용노동부 위촉('14.9.2)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분기별)

《 시 행 근 거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 단체협약 제70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심의 의결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제1호~7호)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중대재해시)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최근3년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총괄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2017년	2016년	2015년	비 고
건 수	43	7	15	21	

○ **최근3년간 연도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현황**

- 2017년 안전(7건)

- 1) 2016년 임직원 건강검진 결과
- 2) 2017년 임직원 건강검진 계획
- 3) 2016년 특수검진 결과
- 4) 추모공원 화장로 화재 경과보고
- 5) SI관련 건강검진 지원
- 6) 2017년도 임직원 건강검진 진행사항(보고)
- 7) 산업재해현황(2009~2016)

- 2016년 안전(15건)

- 1)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심의)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노·사간 심의 · 의결한다.
- 2) 공단 사업장 내 안전(관련)업무 외주현황 보고
- 3) 최근 1년간 공단 내 산재사고 현황 경과 보고
- 4) 내부순환로 및 강변북로 결함 관련 경과 보고
- 5) 장애인콜택시차량 전면부 썬팅 및 후방카메라 설치 요구
- 6) 2017년 안전장구류 항목 예산 반영 결과
- 7) 공단 시설물 내진 현황 및 향후 내진보강 계획
- 8) 2016년 건강검진 및 특수검진 유소견자 관리계획
- 9) 승강장치 유지보수 통합발주
- 10) 부서별 고객접점 응대직원 폭해, 폭언 피해 및 조치현황
- 11) 최근 3년간 안전사고 현황 분석 및 문제점, 개선방안
- 12) 교통부대시설처 혼잡통행료관리소 안전사고 경과 및 향후 조치계획
- 13) 비정규직 직원 단체보험 적용범위 및 가입현황
- 14) 2017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
- 15) 2016년 근무환경 개선 실적 및 2017년 추진계획

- 2015년 안전(21건)

- 1) 2015년도 임직원 건강검진 추진계획
- 2) 어린이대공원 안전사고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 3) 최근 1년간 산업재해 처리 현황
- 4) 공단 내 1인 근무현황
- 5) 현장 근무자 황사(미세먼지) 관련 보호장구 지급현황 1분기
- 6) 중동호흡기 증후군(메르스) 경과 및 조치사항
- 7) 2015년 2/4분기 안전점검 결과
- 8) 공단 산업재해 관련 고용노동부 및 검찰 합동점검 결과
- 9) 2015년 사업장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심의 2분기
- 10) 2015년도 사업장 내 안전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 11) 2015년 3/4분기 안전점검 및 조치결과
- 12) 2015년 아차사고 및 안전보건 개선계획 조사 및 조치결과
- 13) 2015년 작업환경 및 사무실공기질 측정결과
- 14) 2015년 상·하반기 근무환경 개선과제 점검 및 조치결과
- 15) 2015년 2차 대사증후군 검진실시 결과
- 16) 2015년 근로자 예방접종 현황(결과)
- 17) 2015년 상·하반기 직무스트레스 조사 및 조치결과
- 18) 2015년 안전관리처 근무환경개선팀 실시 프로그램 직원 만족도 결과
- 19) 2016년 돛경기장운영처 직원 폐C.T 촬영 검진 추가 요구
- 20) 2016년도 산업안전보건 추진계획(보고)
- 21) 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심의)

○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시행규칙 제33조)

구 분		대 상	시 간	교육강사	시 기
정기 교육	현업종사자	전분야 전직원	월 2시간 이상	각사업소 산업 안전담당자	분기별 6시간이상
	사무직종사자	"	월 1시간 이상	각사업소 산업 안전담당자	분기별 3시간이상
	관리감독자	"	8	외부강사 초빙, 집합교육	반기(6개월)
신규 채용시 교육		신규채용자	8	안전관리처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신규채용시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각분야 현업직원	2	각사업소 산업 안전담당자	작업내용변경시
법정직무 교육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16~34	위탁교육	신규, 보수

○ 월별 교육내용 및 실시방법

월(月)	교육내용	실시방법	비고
1월	·간질환 예방	교육자료 시달	
2월	·뇌혈관질환 예방 ·해빙기 안전관리 · 시설물붕괴	교육자료 시달	
3월	·교대작업 근로자의 건강관리 ·고령근로자 건강관리 · 지진	교육자료 시달	
4월	·교통안전교육 ·근골격계질환 예방교육	전문강사 초빙 교육자료 시달	
5월	·감전재해의 예방 · 풍수해 ·요통재해예방 및 스트레칭	교육자료 시달	
6월	·장마철 전기안전 ·스트레스와 건강	교육자료 시달	
7월	·하절기 건강관리 요령 ·여성근로자 건강관리	교육자료 시달	
8월	·삼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 ·안전보건 기본수칙 및 보호구 착용	교육자료 시달	
9월	·교통안전교육 ·사무실 안전 및 건강장해 예방	전문강사 초빙 교육자료 시달	
10월	·환절기 건강관리 ·심혈관질환 예방 · 가스폭발	교육자료 시달	
11월	·동절기 화재예방 교육	전문강사 초빙 사업장 순회 교육	
12월	·동절기 재해예방(건설현장 포함) ·각종 사고사례를 통한 위험예지훈련	교육자료 시달	

※ 월별 교육내용은 현안 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 특별 교통안전교육

- 실시시기 : 년1회 (*부서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방법 : 본사 소집교육 ※ 교통안전 전문강사 초빙
- 교육대상 : 도로환경처, 도로관리처, 교통정보처의 현업(운전)직원 위주
- 교육내용 : 교통질서, 교통사고와 예방, 자동차운전의 기초이론, 영화상영 등

○ 신규직원 교육

- 실시시기 : 신규직원 채용시
- 교육방법 : 소집교육(오리엔테이션 교육시 병행 실시)
- 교육대상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사고 및 재해 발생경위, 사고유형 및 예방 등에 관한 사항
 - 설비·기계 및 기구의 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 등

□ 산업재해예방 안전점검(분기별)

《 시 행 근 거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안전관리자 직무 등)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보건관리자 직무 등)

○ 점검개요

- 점 검 자 : 안전·보건관리자
- 주 기 : 분기별(또는 필요시)
- 점검대상 : 전 현장사업장
- 점검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내용 위주
※ 노동조합 명예산업안전국장 합동점검

- 작업장, 통로, 보호구,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 경고표시 및 자료 비치여부 등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여부 등 점검 등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여부 등 점검 등

○ 2015년 점검실적

구분	주요 점검사항	적출건수	조치건수	조치율
합 계	4건	158	158	100%
1/4분기	해빙기로 인한 현장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50	50	100%
2/4분기	풍수해 대비 입간판 및 표지판 고정상태 여부 등	41	41	100%
3/4분기	현장 사업장 시설물·설비·근무환경 점검 등	36	36	100%
4/4분기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등	31	31	100%

○ 2016년 점검실적

구분	주요 점검사항	적출건수	조치건수	조치율
합 계	4건	240	240	100%
1/4분기	해빙기로 인한 현장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45	45	100%
2/4분기	풍수해 대비 입간판 및 표지판 고정상태 여부 등	47	47	100%
3/4분기	현장 사업장 시설물·설비·근무환경 점검 등	86	86	100%
4/4분기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상태점검 등	62	62	100%

○ 2017년 점검실적

구분	주요 점검사항	적출건수	조치건수	조치율
합 계	2건	118	61	97%
1/4분기	해빙기로 인한 현장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등	63	61	97%
2/4분기	사업장 위험요인 및 신규사업장 잠재위험요인 중점점검	55	53	96%

3 직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 현황

《 시행 근거 》

-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등의 의무)
 -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 2015년도 근무환경 개선 추진 실적

- 관련근거 : 이사장지시사항 제282번('14.12.30, 핵심가치토론회시)-지속적 추진
- 추진경과
 - 전사적 근무환경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2015.1.9 ~ 2.6)
 - ▶ 중점 사항 : 소수직원 및 소규모 현장 집중 점검(개별 주차장 등 138개소)
 - 2015년 근무환경 개선 추진계획 수립(2015.3.5)
 - ▶ 신규 발굴 개선과제 : 14개 부서, 325건
 - 부서별 개선과제

구 분	개 선 내 용	발굴건수(건)
계		325
장애인콜택시운영처	운전원대기실 휴게비품 개선 등	99
주차시설운영처	천호역 노후 사무집기 개선 등	91
서울어린이대공원	청소(남)휴게실 휴게비품 개선 등	38
상가운영처	을지로상가 방재실 재배치 등	26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조경사무실 조도개선 등	12
총무처	방재살내 노후의자 교체 및 휴게비품 지급 등	11
추모시설운영처	사무실 내 편의시설 개선 등	11
도로시설처	강남도로기전 사무실 시설 개선 등	9
인사처	구내식당 조리실 개선 등	7
도로환경처	청담기지 녹지반 사무집기 개선 등	6
청계천관리처	생태교실 편의시설 개선 등	6
공동구관리처	가락공동구 휴게비품 개선 등	4
교통시설운영처	남산 1,3호터널 노후 LED등 교체 등	3
도로관리처	직영반 사무실 개선 등	2

· 부서별 개선과제 주요 추진내용

구 분	개선과제				주 요 추 진 내 용
	계	완료	단기 추진	장기 추진	
계(건)	325	315	9	1	
장애인콜택시 운영처	99	99	-		[완료] 운전원대기실(사물함, 정수기, 바닥장판, 조도개선, 책상, 의자, 선풍기, 악취차단)
주차시설운영처	91	82	9		[완료] 세종로(전바닥), 동대문(사위실 휴게실 조도, 평상, 종묘(공기청정기), 도봉산(창호 개선) [단기] 사위공간 조성 등
서울여린이 대공원	38	38	-		[완료] 사육사실 노후 사무비품 및 휴게비품 개선 (벽도색, 조도개선 정수기, 공간 분리, 샤워실 개선 등)
상가운영처	26	26	-		[완료] 을지로(방재실 재조성), 종로(휴게비품 지급완료), 종로(수납장 설치, 공간분리)
서울월드컵 경기장운영처	12	12	-		[완료] 조경사무실 (벽, 천장, 출입문 도색), 조경인부 대기실(벽, 천장 도색, 생수정수기 지급), 주차직원 휴게실(바닥장판 교체), 조경인부 샤워시설 개선
총무처	11	11	-		[완료] 방재실, 보안직원, 영선반 노후시설 개선 및 휴게비품 지급, 주차부스 공기청정기 지급
추모시설운영처	11	11	-		[완료] 청소직원 휴게실 시설개선 및 청소비품 보관 개선, 방재실 공기질 개선, 각인실 배기시설 개선 등
도로시설처	9	9	-		[완료] 사무집기 정비 및 개인사물함 등 구비, 샤워실 개선, 사무실 노후 창호 및 천장마감재 교체, 휴게실 천장 누수 및 가습기 교체, 사무실 장판 및 벽지 노후 교체
인사처	7	6	-	1	[완료] 구내식당 시설 개선, 식당 직원 휴게실 개선 [장기] 구내식당 식기세척기 설치(중장기과제)
도로환경처	6	6	-		[완료] 녹지반 및 청소직원 휴게실 사무집기 및 휴게비품 개선, 사무실 노후 시설 및 바닥 마감재 개선
청계천관리처	6	6	-		[완료] 생태교실(환기시설 지속가동, 물청소 실시)
공동구관리처	4	4	-		[완료] 공기청정기 및 전자레인지 구매, 배기 환 주적 가동, 상향모니터 후면부 배기 환 교체,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교통시설운영처	3	3	-		[완료] 터널 관리사무실내 조명(LED등) 교체 등
도로관리처	2	2	-		[완료] 사무실 노후 바닥장판 정비, 창고 천장 누수 보수

※ 장기추진과제(1건) 공간확보시 추진

- 미완료 단기과제(9건) 2017년도내 완료토록 지속적 이행독려

□ 2016년도 근무환경 개선 추진실적

○ 관련근거 : 2016년 주요사업

○ 추진경과

- 2016년 전사적 근무환경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2016.1.12 ~ 2.12)

- ▶ 중점 사항 : 직원 야간근무시설(월드컵 방재실 등 76개소) 및
신규사업장(상수도, 공공자전거)에 대한 점검

- 2016년 근무환경 개선 추진계획 수립(2016.3.2)

- ▶ 신규 발굴 개선과제 : 총 14개 부서, 100건
- ▶ 부서별 개선과제 내용

구 분	개 선 내 용	건수
계		100
상수도지원처	노후 사무잡기 개선 등	48
주차시설 운영처	주차장상황실 사설개선, 노후 의자 교체, 난방시설 개선, 가습기 설치, 조도개선 등	12
총무처	노후 사무잡기 개선(당직실 기계실 방재실, 청사 사설개선 등)	7
상가운영처	방재실 노후 시설 개선, 의자 보수, 공기청정기 설치, 안전칸 설치, 냉방기 보수 등	5
서울어린이 대공원	사육사실 사설개선, 잔디 시설 개선, 배관 설치, 비데 설치, 냉온풍기 보수 등	5
추모시설 운영처	당직실 사설개선(조도 개선, 가습기 설치, 수납함 설치 등)	4
도로시설처	야간 근무자 의자 교체, 조도개선(LED등), 난방시설 개선 등	4
서울월드컵 경기장운영처	근무시설 조도개선(LED등), 야간 근무자용 노후 의자 교체, 당직실 비품 개선	3
공공자전거 운영처	공질 향상을 위한 공기청정기 비치	3
돔경기장 운영처	공무직 휴게실 내 신발장 설치, 그라운드 관리직원용 샤워시설 구비	2
도로관리처	야간 근무자 휴게비품(전차렌지, 커피포트) 구비 및 차량내부 주석인 관리 등	2
도로환경처	난방시설 개선, 차량시설 설치 등	2
공동구관리처	야간 근무자 노후 의자 교체 등	2
청계천관리처	탈의실 노후 전기운동 개선	1

· 부서별 개선과제 주요 추진내용

구 분	개선과제				주 요 추 진 내 용
	계	완료	단기 추진	장기 추진	
계(건)	100	78	19	3	
상수도지원처	48	32	14	2	[완료] 점검원 사무실내 노후책상, 의자 교체 등 [단기] 교체원 사무실내 노후책상, 의자 교체 등 [장기] 점검원 개인사무함 비치(증장기과제) 등
주차시설 운영처	12	11	1		[완료] 청소(여)직원 휴게실내 바닥 개선 등 [단기] 근무공간 난방용량 부족으로 열풍기 사용 개선
총무처	7	7	-		[완료] 당직실내 노후 사무집기(PC, 의자 등) 교체
상가운영처	5	4	1		[완료] 방재실 진입계단내 안전난간 설치 등 [단기] 지하 근무공간 공기청정기 비치
서울야니대공원	5	2	2	1	[완료] 코끼리사 직원 샤워실내 온수 용량 개선 [단기] 열대동물관 여직원 휴게실내 냉온풍기 교체 [장기] 열대동물관 사육사실내 배기시설 설치(증장기과제)
추모시설 운영처	4	4	-		[완료] 당직실내 조도개선 등
도로시설처	4	4	-		[완료] 방재실 노후 의자 교체 등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	3	3	-		[완료] 근무시설(주차상황실 등)내 조도개선 등
공공자전거 운영처	3	3	-		[완료] 자전거 정비실내 공기청정기 비치 등
돔경기장 운영처	2	2	-		[완료] 그라운드 관리직원 샤워시설 구비 등
도로관리처	2	1	1	-	[완료] 야간근무시설내 휴게비품 비치 등 [단기] 차량 내부(순찰대, 직영반) 주기적인 소독
도로환경처	2	2	-		[완료] 정문상황실 눈부심 방지 조치 등
공동구관리처	2	2	-		[완료] 사무실내 고장 의자 교체 등
청계천관리처	1	1	-		[완료] 탈의실내 노후 전기온돌 패널 교체

※ 장기추진과제(3건) 공간확보 및 구조적 문제 검토 후 추진

- 미완료 단기과제(19건) 2017년도내 완료토록 지속적 이행득려

□ 2017년도 근무환경 개선 추진실적

○ 관련근거 : 2017년 주요사업

○ 추진경과

- 2017년 전사적 근무환경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2017.2.6 ~ 3.17)

▶ 중점 사항 : 전 사업장 사무공간, 휴게공간 등에 신규개선과제 발굴

- 2017년 근무환경 개선 추진계획 수립(2017.4.27)

▶ 신규 발굴 개선과제 : 총 15개 부서, 127건

▶ 부서별 개선과제 내용

구 분	개 선 내 용	건수
계		127
주차시설운영처	직원 휴게공간 조성 및 노후 사무집기(책상, 의자 등)교체 등	43
상가운영처	노후 사무집기(책상,서류 보관함 등), 휴게비품(냉장고 등) 교체 및 지하 휴게공간(경비대기실) 공기청정기 구비 등	36
공동구관리처	사무공간내 노후 사무집기(서류 보관함 등) 교체 등	8
장애인콜택시 운영처	협소 대기공간 확대(검토) 및 차량내부 청소기 구매 등	8
서울어린이대공원	휴게공간내 노후 옷장, 냉장고 교체 등	7
상수도지원처	사무공간내 노후 냉장고 교체 및 세탁기 비치 등	6
추모시설운영처	직원 탈의공간 조성 및 냉난방기 비치 등	4
돔경기장운영처	샤워부스내 잠금장치 설치 등	3
도로관리처	사무공간내 전기 온돌 판넬 바닥(일부) 꺼짐 부위 보수 등	3
도로시설처	식당내 식기세척기 비치 검토 등	2
총무처	사무공간내 노후(효율저하) 에어컨 교체 등	2
교통시설운영처	휴게공간 조성(검토) 및 노후PC 교체	2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처	휴게공간내 노후 냉온수기 교체	1
도로환경처	사무공간내 노후 에어컨 교체	1
청계천관리처	사무공간내 공기청정기 비치(검토)	1

- 신규 발굴 개선과제 세부 실행계획 추진 중(해당부서)

별첨 1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1항 <개정 2016.7.19>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1. 교량 가. 도로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교량으로서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2. 터널 가. 도로터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연장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철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철도
나. 철도터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속철도 터널 도시철도 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가. 갑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갑문시설 	
나. 방파제, 파제제 및 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장 1,000미터 이상인 방파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파제로서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연장 500미터 이상의 파제제 방파제 기능을 하는 연장 500미터 이상의 호안

<p>다. 계류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말뚝구조의 계류시설로서 1만톤급 이상의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 1만톤급 이상의 중력식 계류시설
<p>4. 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p>5. 건축물</p> <p>가. 공동주택</p> <p>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역시설로서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역시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u>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u>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p>6. 하천</p> <p>가. 하구둑</p> <p>나. 수문 및 통문</p> <p>다. 제방</p> <p>라. 보</p> <p>마. 배수펌프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구둑 •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u>배수펌프장</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방조제로서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수문 및 통문으로서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 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u>배수펌프장</u>으로서 국가하천의 <u>배수펌프장</u>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u>배수펌프장</u>

<p>7. 상하수도</p> <p>가. 상수도</p> <p>나. 하수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상수도 · 공업용수도 ·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 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p>8. 옹벽 및 절토사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 지면으로부터 연직(鉛直)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 상단으로부터의 높이) 3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p>9. 공동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구

비고

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교량의 "최대 경간장"이란 한 경간에서 상부구조의 교각과 교각의 중심선 간의 거리를 경간장으로 정의할 때, 교량의 경간장 중에서 최댓값을 말한다. 한 경간 교량에 대해서는 교량 양측 교대의 옹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3. 교량의 "연장"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옹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말한다.
4. 도로교량의 "복개구조물"이란 하천 등을 복개하여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는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
5. "갑문, 방파제, 파체제, 호안"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시설을 말한다.
6. "계류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4)에 따른 계류시설을 말한다.
7. "댐"이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수지·댐을 말한다.
8. 위 표 제4호의 용수전용댐과 지방상수도전용댐이 위 표 제7호가목의 1종시설물 중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또는 지방상수도의 수원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시설로 본다.
9.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와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11.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
12.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13.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일반철도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미널을 말한다.
14. "철도 역시설"이란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역 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선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교량시설물에 포함하고, 지하역사의 선로구간은 연속되는 터널시설물에 포함한다.
15. 하천시설물이 행정구역 경계에 있는 경우 상위 행정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한다.
16. "포용조수량"이란 최고 만조(滿潮)시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을 말한다.
17. "방조제"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7조,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 「방조제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방조제를 말한다.
18. 하천의 "통문"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사각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하며, "통관"이란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한 원형 단면의 문짝을 가진 구조물을 말한다.
19. 하천의 "다기능 보"란 용수 확보, 소수력 발전 및 도로(하천 횡단)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보를 말한다.
20. "배수펌프장"이란 「하천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배수펌프장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배수장을 말하며, 빗물펌프장을 포함한다.
21. 배수펌프장과 연계되어 있는 수문 및 통문은 배수펌프장에 포함된다.
22. 위 표 제7호의 상하수도의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및 지방상수도에는 수원지시설, 도수관로·송수관로(터널을 포함한다), 취수시설, 정수장, 취수·가압펌프장 및 배수지를 포함하고, 배수관로 및 급수시설은 제외한다.
23.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하며,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등)은 제외한다.

별첨 2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대상 지침 <발행 : 2015.12. 발행처 : 안전정책실 안전점검과>

특정관리대상시설등 지정 대상

■ 시설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비 고
도 로 시 설	교 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교량으로 - 「도로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 100m 미만 교량 -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 비법정도로 상 도로교량 연장 20m 이상 교량 	
	터 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터널로 - 연장 300m 미만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 농어촌도로의 터널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터널 제외
	육 교	◦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보도육교	
	지 하 차 도	◦ 연장 100m 미만으로 설치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지하철도	
지하도상가		◦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스 키 장		◦ 전수관리	
삭 도 · 궤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관리(관광시설 케이블카 등) ※ 스키장내 삭도시설(리프트 등) 포함 	궤도운송법 적용 대상
유 원 시 설		◦ 전수관리(종합유원시설 및 일반유원시설)	관광진흥법 적용 대상
토 목 공사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장	착공계 접수 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공사장	
수 안 시 설	유선 및 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톤 이상 동력선 전수 ※ 해수면에서 내수면으로 운항하는 유·도선포함 (운항구간 중 최종 종착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지정·관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적용대상(해수면 제외)
	수상레저시설	◦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보유 사업장	수상레저안전법 적용 대상(해수면 제외)
	래프팅보트 시설	◦ 래프팅보트 보유 사업장	
기 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 총공사비는 공사에정금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으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보상비는 제외하며 조달청계약인 경우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을 말한다.

■ 건축물 분야

구 분		대 상 범 위	종 류	비 고	
공공업무시설		◦ 연면적 1,000㎡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공 동 주 택	아 파트	◦ 5층 이상 ~ 15층 이하		※ 다세대주택 제외	
	연립주택	◦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중 소 형 건 축 물	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가,나,다목에 따른 판매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비디오·게임제공업 등)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로 해당시설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일반숙박시설, 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고시원 등		
	운수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8호가목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 「항만법」 제2조제5호나,다목의 여객이용시설 또는 종합여객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 터미널		
	문 화 및	공연장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가목에 따른 공연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연회관, 음악당, 서아커스장 등	
		집회장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나목에 따른 집회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집 회 시 설	관람장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다목에 따른 관람장으로 바닥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 경기장 등	
		전시장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박람회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등	
	의료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가목에 따른 병원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장례식장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8호 장례식장으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장례식장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6호가목에 따른 종교집회장으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구 분		대 상 범 위	종 류	비 고
중소형 건축물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6호마,바목에 따른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영업소로 연면적 300㎡ 이상 ~ 5,000㎡ 미만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영업소	
	관광휴게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7호다,라,마목에 따른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로 연면적 300㎡ 이상 ~ 5,000㎡ 미만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2호가,나,다목에 따른 수련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수련관, 수련원, 유스호스텔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1호가,나,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 ~ 5,000㎡ 미만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노인복지 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 의료복지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 근로복지시설	※ 단독·공동 주택, 1층 근린 생활 시설 제외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3호가,나목에 따른 운동시설로 연면적 500㎡ 이상 ~ 5,000㎡ 미만	체육관, 체력단련장, 에어 로빅장, 볼링장 등	
대형건축물		◦ 11층 이상 ~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 이상 ~ 30,000㎡ 미만의 건축물		※ 건축법 제2조 (건축물 용도) 제2항제21호 및 제22호 제외
대형광고물		◦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 4m 이상·폭 3m 이상(옥상간판 등)		
건 축 공사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공사장		※ 착공계 접수 즉시 지정
	중단된 공사장			
기 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및 지역	번지점프장, 쥘와이어 등 고위험이 유발되는 고정식 레포츠시설, 단독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등	

※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중소형건축물, 대형건축물은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한다.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중소형건축물로 분류된 시설 중 대형건축물(11층 이상 ~ 16층 미만, 연면적 5,000㎡ ~ 30,000㎡)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건축물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별첨 3

[시특법대상 시설물]

[별표 1의2] <시행 2016.1.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

1. 정기점검

가. A·B·C등급의 경우: 반기에 1회 이상

나. D·E등급의 경우: 해빙기·우기·동절기 전 각각 1회씩 1년에 3회 이상. 이 경우 해빙기 전 점검시기는 2월·3월로, 우기 전 점검시기는 5월·6월로, 동절기 전 점검시기는 11월·12월로 한다.

2.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E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비고

1.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같음한다.
2.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4. 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9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5. 정밀점검란의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항만시설물 중 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은 위 정밀점검의 실시 주기에도 불구하고 4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여야 한다.
6. 정밀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이 속한 반기에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7.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완료일부터 6개월 전 이내에 그 실시 주기의 마지막 날이 속하는 정밀점검은 생략할 수 있다.
8.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별첨 4

다중이용시설

(총 30개소 : 지하도상가 19개소, 주차장 13개소)

연 번	부 서 명	시 설 명	위 치	규 모 (m ²)	비 고
1	상가운영처	강남역(남측) 지하도상가	강남구 역삼동821-1	12,315	
2		강남역(북측) 지하도상가	강남구 역삼동821-1		
3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	서초구 반포동	31,566	
4		명동/명동역/소공1,2,3차 지하도상가	중구 남대문로2가소공동	3,838 / 2,215 / 6,799	
5		신당 지하도상가	중구 황학동	5,058	
6		영등포역/영등포로터리 지하도상가	영등포구 2가3가	4,678 / 6,325	
7		을지로2구역 지하도상가	중구 을지로 2가	20,334	
8		을지로3구역 지하도상가	중구 을지로3가		
9		을지로4구역 지하도상가	중구 을지로4가		
10		잠실역 지하도상가	송파구 잠실5동	8,445	
11		잠실지하광장 지하도상가	송파구 잠실동	10,289	
12		회현 지하도상가	중구 충무로 1가	9,031	
13		을지로1구역 지하도상가	중구 을지로1,2가	4,871	
14		남대문 지하도상가	중구 남대문로4가	3,831	
15		충무 지하도상가	중구 남산동2가	2,202	
16		종로4가 지하도상가	종로구 종로4가	2,995	
17		종각쇼핑센터	종로구 종로2가	4,724	
18		종로5가 지하도상가	종로구 종로5가동	4,165	
19		영등포시장 지하도상가	영등포구 영등포5가	3,637	
20	주차시설 운영처	세종로 공영주차장	종로구 세종로 80-1	47,995	
21		영등포구청역 지하주차장	영등포구 당산동3가 370	10,865	
22		잠실역 지하주차장	송파구 잠실동 29	14,881	
23		종묘지하주차장	종로구 훈정동 5번지	55,188	
24		천호역지하주차장	강동구 천호동 480-38	52,721	
25		학여울역 지하주차장	강남구 대치동 512	9,662	
26		구파발 환승센터	은평구 진관동 70-1	13,066	
27		천왕역 환승센터	구로구 오류동 354-4	12,834	
28		개화역 환승센터	강서구개화동 490-3	16,788	
29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도봉구 도봉동288-19	16,597	
30		용산주차빌딩 공영주차장	용산구 한강로2가 12-9	20,912	
31		영남공영 주차장	영등포구 영등포4가 123	25,166	
32		신방화역 환승주차장	마곡서1로 111-12	7,878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대상)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연속되어 있는 2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